

의회 법안 제647호

305장

산업 안전에 관해, 섹션 6390.2를 노동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

[2019년 9월 20일 주지사 승인을 받음. 2019년 9월
20일 국무 장관에게 제출.]

입법 법률 고문의 요약

AB 647, Kalra. 유해 물질: 화장품: 소독제: 안전 문서.

기존 법률인 유해물질정보교육법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고용주들, 캘리포니아에서 유해물질을 고용주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해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산업관계 국장은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제조업체, 고용주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이 목록에 있는 유해물질의 제조업체는 유해물질 직접 구매자들에게 현재의, 정확하고 완전한 규격 정보가 포함된, MSDS라고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본 법안에 따라, 정의된 대로,化妆품을 구성하거나 소독제로 사용되는 유해물질 또는 물질들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그 제품에 대해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야 하는 업체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사의 브랜드 이름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자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규정에 따라, SDS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색상 또는 색조에 근거한 별도의 SDS가 현존하는 경우, 당해 법안에 따라 당해 업체는 각 SDS를 게시하고 번역해야 한다. 당해 법안에 따라 당해 업체는 SDS를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및 한국어, 그리고 당해 국장이 미용 산업에 공통된 언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언어들로 번역하고, 이들 번역문도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항. 노동법에 다음과 같이 6390.2항을 추가한다.

6390.2. (a) 보건안전법 제 109900항에 정의된 대로, 化妆품을 구성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물질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9부, 12조, 977항에 정의된 대로, 소독제를 구성하는 물질 또는 물질들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며, 제6385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업체로서, 본 장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 8편, 5194항에 따라 SDS를 작성하거나

입수해야 하는 업체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사의 브랜드 이름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당해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6390항에 따라 SDS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색상 또는 색조에 근거한 별도의 SDS가 현존하는 경우, 당해 업체는 각 SDS를 게시하고 번역해야 한다. 당해 업체는 SDS를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및 한국어, 그리고 당해 국장이 미용 산업에 공통된 언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언어들로 번역해야 한다. 이 번역문도 당해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b) 본 조항은 201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